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2068호

도시계획시설(응암제1구역 근린공원2)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서울시 고시 제2008-298호(2008.9.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은평구 제2023-163호(2023.12.7.)로 최종 결정, 은평구고시 2023-121호(2023.4.6.)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응암제1구역근린공원2에 대하여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은 평 구 청 장

1. 공 원 명 : 응암제1구역 근린공원2
2. 위 치 :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3. 면 적 : 2,516.9 m^2
4.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의 내용
 - 근린공원2(변경) 총괄
 - 가. 공원면적변경 : 2,472.0 m^2 → 2,516.9 m^2
 - 나. 기반시설(도로) : 236.8 m^2 → 221.9 m^2
 - 다. 기반시설(광장) : 481.6 m^2 → 363.9 m^2
 - 라. 조경시설 : 179.2 m^2 → 206.5 m^2
 - 마. 휴양시설 : 80.5 m^2 → 79.4 m^2
 - 바. 관리시설 : 0 m^2 → 0 m^2
 - 사. 그 밖의 시설 : 0 m^2 → 114.6 m^2
 - 아. 녹지 및 기타 : 1,493.9 m^2 → 1,530.6 m^2
- ※ 세부조서 및 도면 별첨 참조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근린공원2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근린공원2 총괄표

구분		기정(근린공원2)						변경(근린공원2)						비고
		부지면적 (<i>m</i> ²)	시설면적 (<i>m</i> ²)	건축물			공작 물 (기)	부지면적 (<i>m</i> ²)	시설면 적 (<i>m</i> ²)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i>m</i> ²)	연면 적 (<i>m</i> ²)				동수 (동)	바닥 면적 (<i>m</i> ²)	연면 적 (<i>m</i> ²)		
계		2,472.0	978.1				29	2,516.9	986.3				26	증 44.9 <i>m</i> ²
기 반 시 설	소계	718.4	718.4				-	585.8	585.8				-	감 132.6 <i>m</i> ²
	도로	236.8	236.8				-	221.9	221.9				-	감 14.9 <i>m</i> ²
	광장	481.6	481.6				-	363.9	363.9				-	감 117.7 <i>m</i> ²
조경시설		179.2	179.2				3	206.5	206.5				2	증 27.3 <i>m</i> ²
휴양시설		80.5	80.5				22	79.4	79.4				22	감 1.1 <i>m</i> ²
관리시설		-	-				4	-	-				2	-
그 밖의 시 설		-	-				-	114.6	114.6				-	증 114.6 <i>m</i> ²
녹지 및 기 타		1,493.9	-				-	1,530.6	-				-	증 36.7 <i>m</i> ²

나. 세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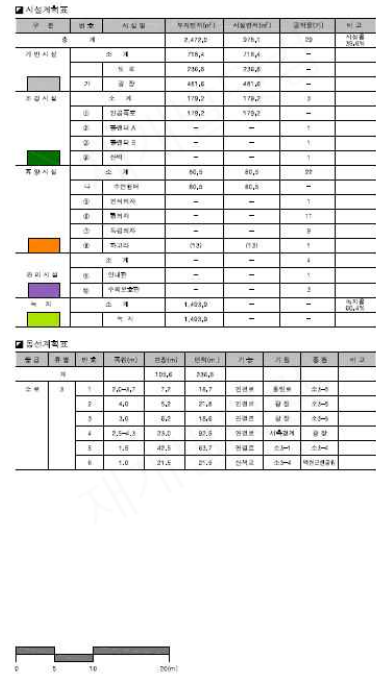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	연면적 (㎡)						바닥 면적 (㎡)	연면적 (㎡)		
합 계				2,472.0	978.1	-	-	29			2,516.9	986.3	-	-	26	
기반시설	소 계			718.4	718.4	-	-	-			585.8	585.8	-	-	-	
	도 로			236.8	236.8	-	-	-			221.9	221.9	-	-	-	
	광 장	가	응암동 17-1	481.6	481.6	-	-	-	가	응암동 17-1	363.9	363.9	-	-	-	
조경시설	소 계			179.2	179.2	-	-	3			206.5	206.5	-	-	2	
	인공폭포	①	응암동 17-1	179.2	179.2	-	-	-	①	응암동 17-1	206.5	206.5	-	-	-	
	플랜터 A	②		-	-	-	-	1	②		-	-	-	-	1	
	플랜터 B	③		-	-	-	-	1	③		-	-	-	-	1	
	산벽	④		-	-	-	-	1			-	-	-	-	-	
휴양시설	소 계			80.5	80.5	-	-	22			79.4	79.4	-	-	22	
	수변쉼터	나	응암동 17-1	80.5	80.5	-	-	-	나	응암동 17-1	79.4	79.4	-	-	-	
	연식의자	⑤		-	-	-	-	1	④		-	-	-	-	4	
	평의자	⑥		-	-	-	-	11	⑤		-	-	-	-	2	
	독립의자	⑦		-	-	-	-	9	⑥		-	-	-	-	16	
	파고라	⑧		(13)	(13)	-	-	1			-	-	-	-	-	
관리시설	소 계			-	-	-	-	4			-	-	-	-	2	
	안내판	⑨		-	-	-	-	1	⑦		-	-	-	-	1	
	수목보호판	⑩		-	-	-	-	3	⑧		-	-	-	-	1	
그 밖의 시설	소 계			-	-	-	-	-			114.6	114.6	-	-	-	
	엘리베이터			-	-	-	-	-	⑨	응암동 17-1	25.7	25.7	-	-	-	
	에스컬레이 터			-	-	-	-	-	⑩	응암동 17-1	88.9	88.9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1,493.9	-	-	-	-			1,530.6	-	-	-	-	
	녹지			1,493.9	-	-	-	-			1,530.6	-	-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05.6	236.8				
변경					99.1	221.9				
당초	소로	3류	1	2.0~3.7	7.2	18.7	연결로	통일로	소로 3-5	
변경		3류	1	2.0~3.7	7.2	15.1	연결로	통일로	소로 3-4	
폐지		3류	2	4.0	5.2	21.8	연결로	광장	소로 3-5	
당초		3류	3	3.0	6.2	18.6	연결로	광장	소로 3-5	
변경		3류	2	3.0	5.2	16.0	연결로	광장	소로 3-4	
당초		3류	4	2.5~4.3	23.0	92.5	연결로	서측경계	광장	
변경		3류	3	2.5~4.3	23.9	103.0	연결로	서측경계	광장	
당초		3류	5	1.5	42.5	63.7	연결로	소로 3-1	소로 3-4	
변경		3류	4	1.5	41.3	62.0	연결로	소로 3-1	소로 3-3	
당초		3류	6	1.0	21.5	21.5	산책로	소로 3-4	백련근린공원	
변경		3류	5	1.2	21.5	25.8	산책로	소로 3-3	백련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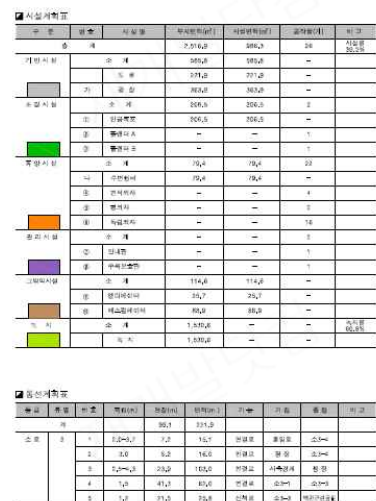


응암제1구역 근린공원2



S = 1 : 200

응암제1구역 근린공원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208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 나.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감사청렴담당관, 전화 : 02-351-6055, FAX : 02-351-5613 또는 E-mail : bombi211@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변 호	
------------	--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3. 12. . 감사청렴담당관
----------------	------------------------

1. 제안이유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불이행에 따른 징계 기준 신설(안 별표 제14호)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3. 12. 21. ~ 2024. 1. 10. (예정)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작성제외법령(가족정책과-43836호, 2023.12.12.)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음(감사청렴담당관-14962호, 2023.12.11.)

작성자 : 감사청렴담당관 감사팀 박춘우 (전화 6055)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4. 정보공개 불이행	1.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2.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3. 그 밖의 위반사항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 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 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20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약칭 후 그 이하에서 나오지 않는 용어의 약칭 삭제(안 제9조)
- 나. 보상금 지급 제한대상에 ‘공직자’외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감사청람담당관 전화 : 02-351-6063, FAX : 02-351-5613 또는 E-mail : limss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	--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3. . 감사청렴담당관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약칭 후 그 이하에서 나오지 않는 용어의 약칭 삭제(안 제9조)
- 나. 보상금 지급 제한대상에 ‘공직자’외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23. 12. 21. ~ 2024. 1. 10. (예정)
-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가족정책과-43472호, 2023.12.08.)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음(감사청렴담당관-14806호, 2023.12.06.)

작성자 : 감사청렴담당관 청렴조사팀 임소연 (전화 6063)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익제보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공직자 등이”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u>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 ----- ----- <u>공익제보센터</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상금) ① (생 략)	제13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u>공직자 등이</u>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u>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u>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